

#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년 11월 15일 부천시장

나. 회부일자 : 2010년 11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66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2010년 12월 15일) 상정 수정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 □ 제안이유

-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2275호, 2010. 7. 15. 공포·시행)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공무원 휴가제도 등을 개선하는 한편,
-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복무선서문을 반영하는 등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핵심 공직가치를 중심으로 간결하게 공무원 선서문이 개정됨에 따라 선서문을 변경함(안 제2조제3항 신설, 별표 1, 별표 1의2 신설).
- 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을 규정함(안 제19조의2 신설 및 별표 4 신설).

- 다.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규정함(안 별표 3).
- 라. 모성 보호를 위하여 특별휴가를 확대함(안 제24조).
- 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추어 중복된 조항을 삭제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자녀와 자녀배우자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시 2일 휴가는 너무 무리한 일수 아닌가?	○ 행안부 준칙을 따랐으나 타 시·군과 비교할 때 휴가일수를 조정할 필요는 있음. (이상 행정지원과장)

### 4. 토론요지

#### 가. 반대토론

- 자녀와 자녀배우자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시 특별휴가 2일을 타 시·군과 같이 3일로 늘려 수정의결 하는 것이 타당함.

#### 나. 찬성토론 : 없음

###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78
의결 연월일	2010. 12. 15

제안년월일 : 2010년 12월 15일

제안자 : 행정복지위원장

## 1. 수정이유

- 공무원의 경조사별 휴가일수 중 자녀와 자녀배우자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시 2일의 특별휴가는 현실상 불합리한 규정이므로 타 시·군과 같이 휴가일수를 3일로 늘리는 것으로 수정함.

## 2. 수정 주요골자

- 자녀와 자녀배우자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시 휴가를 3일로 수정함.(별표 3)

##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개정안	수정안
결혼	본인	5	5
	자녀	1	1
출산	배우자	5	5
입양	본인	20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u>2</u>	<u>3</u>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u>2</u>	<u>3</u>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1

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음.』

## 신구조문 대비표

###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현 행	개정안	수정안
결혼	본인	7	5	5
	자녀	-	1	1
출산	배우자	3	5	5
입양	본인	14	20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5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u>3</u>	<u>2</u>	<u>3</u>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u>3</u>	<u>2</u>	<u>3</u>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1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1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1	1

##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라 부천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장,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2항 중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을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휴직”을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를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로, “가산한다”를 “더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을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20조제6항 중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결근일수·정직일수·강등 및 직위해제일수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 ③ 질병 또는 부상 외의 사유로 지각·조퇴·외출은 모두 더하여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 ④ 제22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24조제2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 전후에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 ⑦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⑧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4장, 제28조, 제29조 및 제3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장,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의2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1의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9조의2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 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